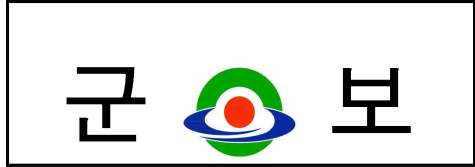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561호 2024. 10. 10.(목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고 시

○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준공 승인 고시(예천군 고시 제2024-123호)

공 고

○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공고
(예천군 공고 제2024-1442)

○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(예천군 공고 제2024-1443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(전화 650-6064)

농업기반정비사업(개간) 준공 승인 고시

농어촌정비법 제114조 및 영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간사업 준공
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10월 10일

예 천 군



- ① 사업목적 : 미간지를 농지로 조성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함.
② 사업효과 :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.

승 인 조 서

사업명	위 치				승인 면적 (㎡)	사업기간 (시행계획 승인)	총소요 사업비 (천원)	사업시행자
	시군	읍면	리동	지번				
농업기반 정비사업 (개간)	예천	지보	어신	산1-9	772	2024.03.18.~ 2025.03.31.	35,000	김 진 ○
				산1-11	898			장 경 ○ 유 경 ○ 최 은 ○

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 공람공고

예천군 지보면 매창리 884번지 일원 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13조,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10일

예 천 군 수

1. 공람기간 : 2024. 10. 10. ~ 2024. 10. 24. (14일간)
2. 공람장소 : 예천군청 도시과
3. 공람내용 :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및
전략환경영향평가서(초안)
4. 관련도면 및 조서 : 불임참고
※ 불임 결정(변경)도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)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
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5. 의견제출 :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로 문의하시기
바랍니다.

[붙임] 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①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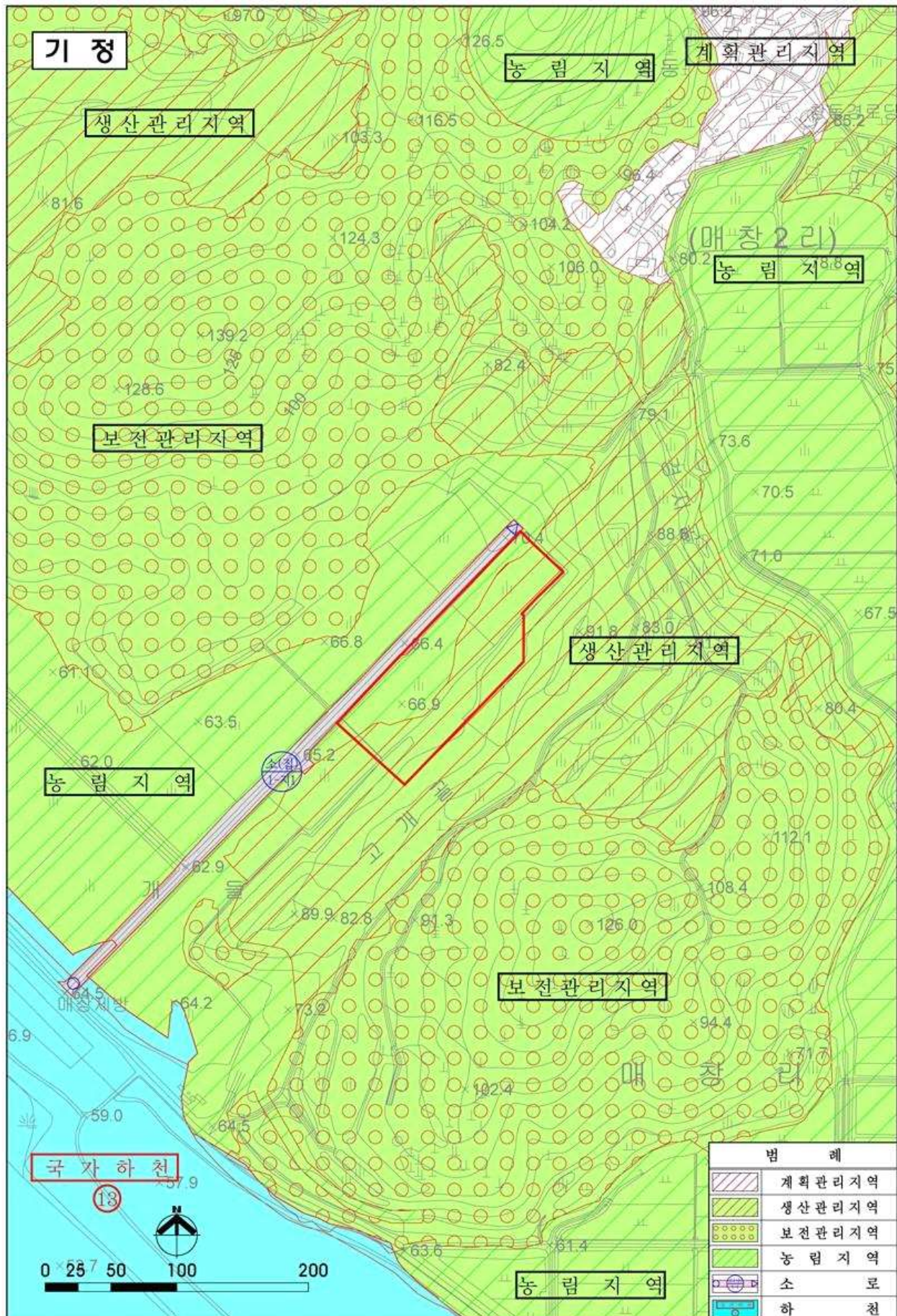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조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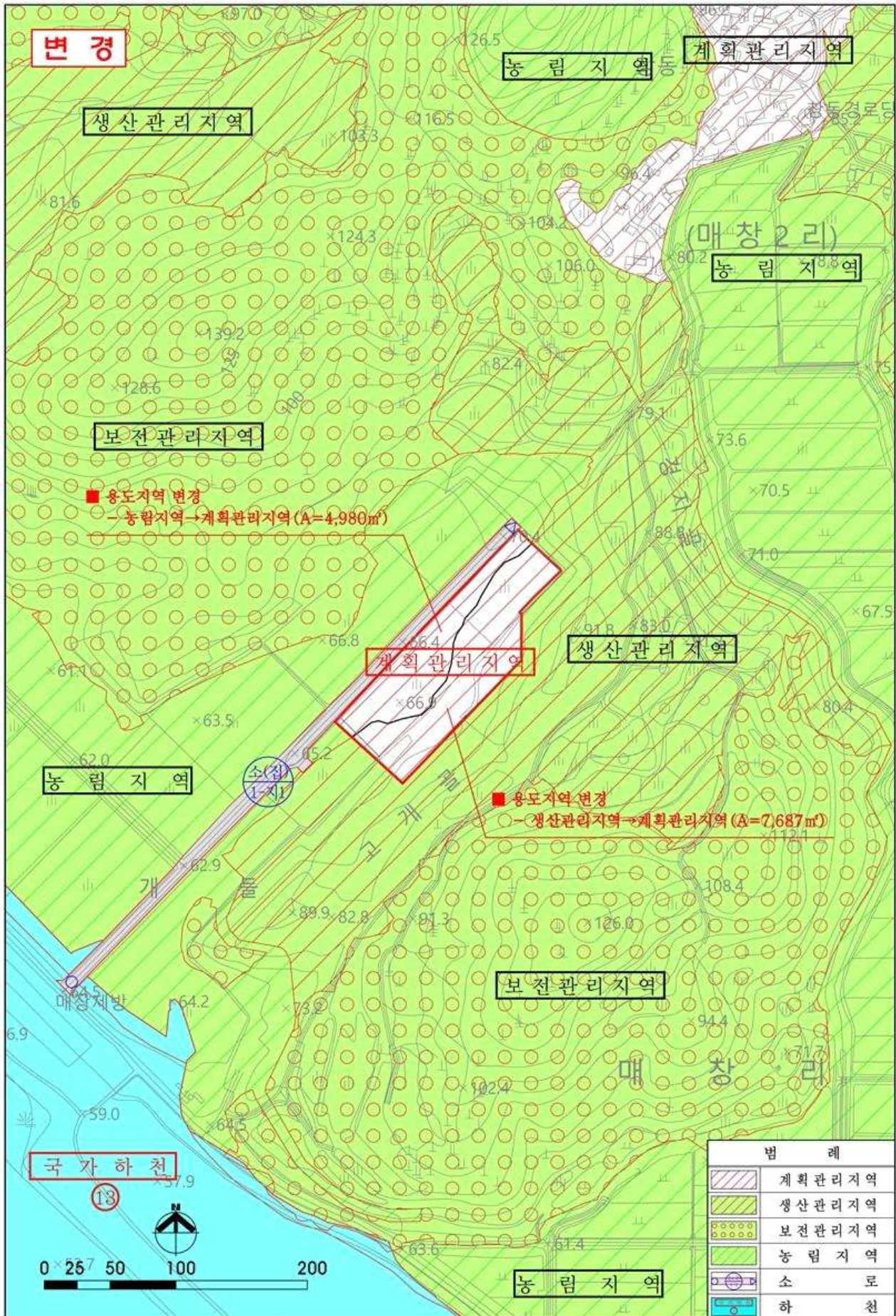
구 분	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	12,667	-	12,667	100.0	
비 도 시 지 역	관 리 지 역	생 산관리지역	7,687	감) 7,687	-	-	
		계 획관리지역	-	증) 12,667	12,667	100.0	
	농 립지역		4,980	감) 4,980	-	-	
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지보면 매창리 884번지 일원	생 산관리 지역	계 획관리 지역	7,687	100% 이하	• 지보면 매창리 일원 ‘곤충· 양잠산업 거점단지, 임대형 수직 농장’의 계획적·체계적 개발을 위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-	지보면 매창리 644번지 일원	농 립지역	계 획관리 지역	4,980	100% 이하	

[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도]





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공람공고

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89번지 일원 별방지구 이주단지조성을 위한 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10월 10일

예 천 군 수

1. 공람기간 : 2024. 10. 10. ~ 2024. 10. 24. (14일간)

2. 공람장소 : 예천군청 도시과

3. 공람내용 :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

4. 관련도면 및 조서 : 불임참고

※ 불임 결정(변경)도(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생략)는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의견제출 : 예천군청 도시과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

6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(☎054-650-63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예천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. 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조서

구 분		면 적(㎡)			구성비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9,531	-	증) 9,531	100.0	-
비 도 시 지 역	관리지역	-	증) 9,531	증) 9,531	100.0	-
	계획관리지역	-	증) 9,531	증) 9,531	100.0	-
	농림지역	9,531	감) 9,531	-	-	-

2. 용도지역 결정(변경)(안) 사유서

도면표시 번 호	위 치	용도지역		면적 (㎡)	용적률 (%)	결정(변경)사유
		기정	변경			
-	예천군 감천면 별방리 389번지 일원	농림 지역	계 획관리 지역	9,531	100% 이하	• 이주단지 조성(별방지구 지구 단위 종합복구사업)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

[군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(안)도]

